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3699	주무관	생활체육팀장	문화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2.11.	이진석	원현묵	이진호	고한석	하철승	02/11 박검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	행정지원과장	임재홍				
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	
		보건위생과장	최경희				

2016 강북구 생활체육회 활동지원계획



2016.2.4.

강 북 구

(문화체육과)

2016년 강북구 생활체육활동 지원계획

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유도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대회개최 및 참가 등 생활체육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.

1 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 및 제8조(지방체육의 진흥)
- 문화예술 체육·관광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(2011.5월 문화체육관광부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(경비의 지원)

2 추진방향

- 생활체육인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호인 클럽 활성화
-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유도하고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지원
 - 종목별 대회의 등급을 지정하여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도 증진 및 활성화 기대
 - 찾아가는 생활체육을 통하여 공공생활체육의 의미성 부여
-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
 -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생활체육 관계자 보조금 집행 등 회계관련 교육실시

3 지원내용

- 생활체육회 주관 각종목별연합회 대회비
- 생활체육회 주관사업비
-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
- 생활체육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 등

□ 생활체육대회 지원부분

- 기 간 : 2015. 1 ~ 12월
- 장 소 : 관내 종목별 개최장소
- 참여인원 : 50,000여명
- 집행금액 : 128,560천원
- 추진내용 :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

□ 서울시민체육대회 지원부분

- 일 시 : 2015. 8. 16
- 장 소 : 잠실종합경기장
- 참여인원 : 500여명
- 집행금액 : 18,000천원
- 추진내용 :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출전 종목을 통한 화합의 무대 마련

□ 어른신생활체육대회

- 일 시 : 2015. 10. 22
- 장 소 : 서울88체육관
- 참여인원 : 100여명
- 집행금액 : 3,000천원
- 추진내용 : 어른신들의 생활체육을 통한 신체적, 정신적 건강증진과 건전한 노후생활 여건제공

□ 자매도시 친선교류전

구 분	김천시	양평군
일 시	2015. 10. 31	2015. 11. 6
장 소	김천시 생활체육공원	강북구민운동장외 보조경기장
참여인원	80여명	80여명
집행금액	4,000천원	5,000천원
추진내용	자매도시와의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로 다양한 활동 체험은 물론 정보교환과 도시간의 교류활동 전개	

□ 한마음 체육대회

- 일 시 : 2015. 11. 18
- 장 소 : 서울우이초등학교(체육관)
- 참여인원 : 120여명
- 집행금액 : 500천원
- 추진내용 : 강북구의회, 강북구체육회, 강북구생활체육회 임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족구 및 명랑운동회 등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단합과 건강증진 효과 제고

□ 주말가족 스포츠캠프

- 일 시 : 2015. 9. 12~13
- 장 소 : 성산청소년수련관(강화도 소재)
- 참여인원 : 120여명
- 집행금액 : 6,000천원
- 추진내용 : 일상을 벗어나 맑은 공기속에서 가족단위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의 화합과 화목의 기회를 제공

□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

- 기 간 : 2015. 3 ~ 12
- 장 소 : 강북구 관내 공공기관 및 노인·아동복지시설, 초등학교 등
- 참여인원 : 62,000여명
- 집행금액 : 13,000천원
- 추진내용 : 신체적,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

□ 2015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및 구민가요제

- 일 시 : 2015. 10. 11
- 장 소 : 강북구민운동장
- 참여인원 : 7,000여명
- 집행금액 : 135,000천원
- 추진내용 : 구민체육대회와 구민가요제를 통하여 강북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

□ 추진개요

- 기 간 : 2016. 2 ~ 12
- 추진사업 :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, 생활체육회 사업지원
- 세부사업내용

구 분	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부분	생활체육회 사업지원 부분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-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 대회 - 전국대회 참가 - 시민체육대회 참가 - 기타 신규 생활체육대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르신생활체육축제 - 찾아가는 서비스 - 자매도시 교류전 개최 및 참가 - 건강증진 한마음체육대회 - 강북구민 가족캠프 - 사무국 운영비 및 차량구입

- 지원방법 : 강북구생활체육회와 약정체결 후 청구에 의한 일정별 지원
- 예 산 : 256,050천원
 -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: 170,300천원
 - 생활체육회사업지원 : 44,800천원
 - 생활체육사무국운영비지원: 13,200천원
 - 생활체육사무국 차량지원 : 27,750천원
- 예산과목 : 문화체육과, 생활체육육성, 생활체육활성화, 생활체육 활동지원, 민간이전, 민간경상보조(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)

□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현황

(2016. 2월기준)

연합회수	각 종목별 명칭	비 고
28개종목	볼링, 수영, 국학기공, 검도, 댄스스포츠 낚시, 게이트볼, 체조, 등산, 축구, 배구 배드민턴, 태권도, 족구, 육상, 택견 보디빌딩, 골프, 유도, 밸리댄스, 씨름 농구, 줄넘기, 복싱, 야구, 요가 이종격투기, 테니스	신규종목 : 강북구바둑연합회 (2017년 정식 종목 선정예정)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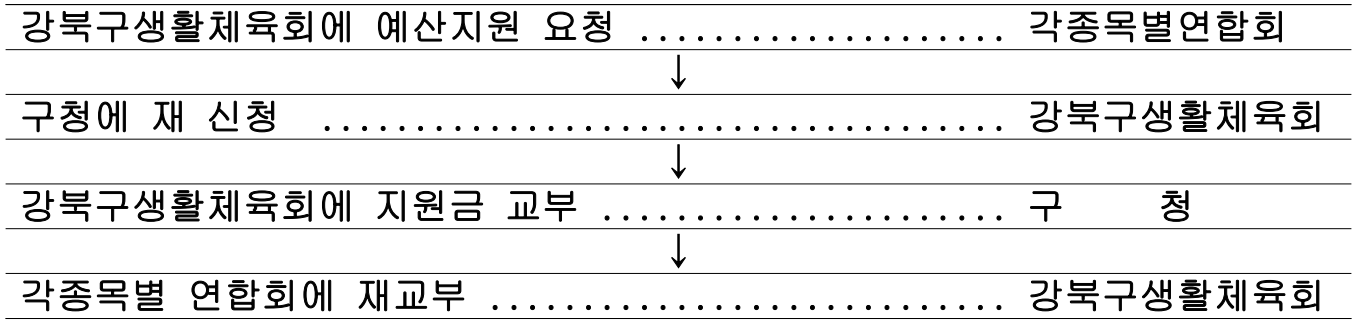
세부추진계획

□ 사업별 지원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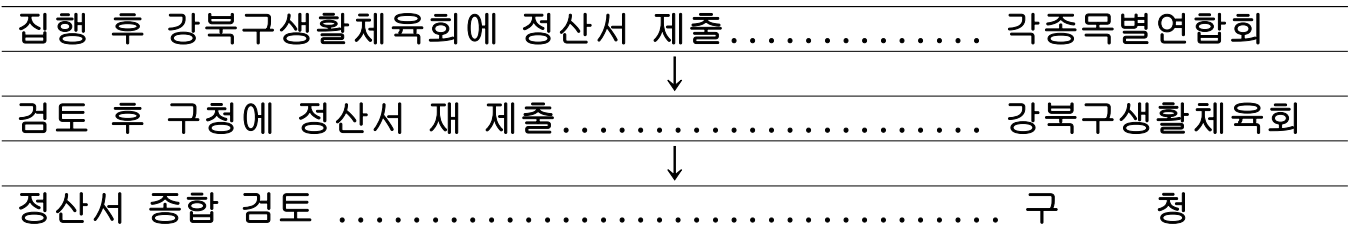
예산 항목	사업내역	금 액	지출내역 (단위: 원)	비고	
	총계	256,050,000			
사업비	소계	170,300,000			
	생활체육 대회개최 및참가 지원	122,400,000	구청장기 대회 차등지원		
			A등급 : 7개 연합회 × 5,500,000=38,500,000		
			B등급 : 7개 연합회 × 5,100,000=35,700,000		
			C등급 : 5개 연합회 × 4,600,000=23,000,000		
		D등급 : 6개 연합회 × 4,200,000=25,200,000			
		15,400,000	구연합회장기 대회		
			11개 연합회 × 1,400,000=15,400,000		
		6,000,000	시연합회장기 대회		
			15개 연합회 × 400,000=6,000,000		
		7,500,000	시장기 또는 전국대회 참가		
	15개 연합회 × 500,000=7,500,000				
	19,000,000	시민체육대회 참가 =19,000,000			
	소계	44,800,000			
	어르신 체육대회	4,000,000	서울시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운영비		
	자매도시 교류전	13,000,000	양평교류전(방문)= 5,000,000		
			김천(강북구 개최)교류전=8,000,000		
	강북구민 가족캠프	6,000,000	강북구민 가족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		
	한마음 체육대회	800,000	강북구의회, 강북구체육회, 강북구생활체육회 운영비		
	연합회 지원	2,000,000	신규 연합회 또는 소규모 연합회 육성지원		
	대회 운영비	4,000,000	대회, 상장 등 대회 관련 물품 제작비		
	찾아가는 서비스	15,000,000	월 1,500,000 × 10개월		
	소계	13,200,000			
	사무국 운영비	8,400,000	월 700,000 × 12개월=8,400,000		
	차량 운영비	4,800,000	-차량 보험료, -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등		
	소계	27,750,000			
	생활체육 사무국 차량지원	27,750,000	-생활체육회 사무국 차량구입비 지원		

□ 지원 및 정산절차

○ 지원절차



○ 정산절차



□ 예산 집행 관련 교육 실시

- 일 시 : 2015. 3월 중
- 장 소 : 강북구생활체육회 사무실
- 대 상 : 각 종목별 연합회 사무장
- 내 용
 - 예산 집행방법 :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원칙, 결재 불가능 항목 만
계좌 입금(심판비,인건비 등)
 - 예산 집행 관련 규정 : 집행가능 품목, 금지 품목 등
 - 정산 서류 공통 작성(※ 정산서 및 자체평가서 등) 자료첨부

□ 구 지원금 예산지출 항목

- 집행가능 품목 : 심판/진행요원 수당, 행사물품 제작구입
현수막·대회책자 제작시 “강북구지방보조금 지원사업” 표기
대관료, 차량임차료, 보험료, 내빈용 다과 및
진행요원 식대(과대지출지양)
대회관련 운영용품(사무용품) 구입 등
- 집행금지 품목 : 시상금품, 식비, 송금수수료, 기념품, 단체운영기본경비

□ 2016년 예산 집행 지도점검

- 기 간 : 2016. 12월중
- 대 상 : 생활체육회 사업 및 대회 전종목
- 내 용 : 2016년 예산 지출내역(보조금, 참가비, 자체부담 등)
예산집행 계획 및 정산내역 비교, 행사기준 준수사항 등
- 점 검 자 : 구청 생활체육 관련 담당자외 1명

7

행 정 사 항

- 생활체육 행사를 위한 공공시설물 사용 협조 : 강북구도시관리공단
- 대회 진행을 위한 차량 및 의료 지원 협조 : 행정지원과, 보건소
- 행사지원에 따른 근무 직원여비, 급량비 지급 : 기획예산과
- 생활체육회 대회지원금 교부통보 및 약정체결
-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관리·감독 철저 : 강북구생활체육회
- 생활체육회 자체계획 수립 후 구청에 제출 : 강북구생활체육회
-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 완료 후 정산서 제출 : 관련단체

- [아 래] 1. 약정서 1부.
2. 2016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일정 1부.(붙임1)
3. 정산서 자료 1부.(붙임2) 끝.

2016년도 강북구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약정서

2016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, 생활체육회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강북구청장을 “강북구” 라 하고 강북구생활체육회장을 “생활체육회” 로 하여 대회지원에 따른 권리 및 의무 또는 업무협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사 업 명	사 업 기 간	사 업 금 액
강북구생활체육활동 지원	2016. 3 ~ 12	사업별 지원금액 참조

제1조(목적)

본 약정은 2016년 생활체육동호인육성지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강북구로부터 대회지원금 등을 받는 생활체육회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

“강북구” 와 “생활체육회” 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익추구,비정치,비영리의 원칙)

“강북구” 와 “생활체육회” 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.

제4조(지원사업의 범위)

본 지원금은 생활체육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“생활체육회” 가 계획한 대회지원, 각종 운영사업 및 사무국 운영비, 차량지원비 등에 사용한다.

제5조(지원금의 교부 및 집행)

- ① “강북구” 는 “생활체육회” 의 청구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한다.
- ② “강북구” 의 지원금 교부계획에 따라 “생활체육회” 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“강북구” 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“생활체육회”는 “강북구”의 계획 검토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한다.

제6조(지원사업 지도)

“강북구”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회”에 대한 사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(자료)등을 검사하고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또한 차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출의 입증)

“생활체육회”는 지원금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사용의 원칙 : 거래명세서(내역서) (카드의 종류 등 “강북구”와 협의)
2. 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우 : 카드매출 영수증, 무통장(온라인)입금증
3. 심판수당 등 인건비 지출 : 지급조서 작성 후 무통장(온라인)입금증 및 관련 세금계산서(원천징수 납부 영수증)를 납부하여야 한다.
4. 현금지급 : 현금영수증
5. 기타 게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“지방보조금 관리지침”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.

제8조(지원금의 정산)

- ① “생활체육회”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중단, 폐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대회에 지원한 지원금을 비롯한 집행금액 모두에 대하여 정산서 (증빙서류 첨부)를 “강북구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“생활체육회”는 제1항에 의한 정산서 제출 시 발생한 지원금 집행잔액 (발생이자 포함)을 정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“강북구”가 정한 지정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계장부의 비치)

“생활체육회”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약정의 해지)

“강북구”는 “생활체육회”가 본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“생활체육회”에게 사업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생활체육회”는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“강북구”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,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지원금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약정서의 보관)

“강북구”와 “생활체육회”는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일

강 북 구 청 장 박 겠 수 (인)
강북구생활체육회장 박 시 우 (인)